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0
------	-----

제출년월일 : 2001.11. 2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① 민원행정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 체제로 전환하여 고객 및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주민들이 최단거리에서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무인민원발급기와 복합인증기를 설치·운영함 ②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수정 ③현행 평창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상위 법률인 유기장업법 폐지로 사문화된 수수료요율에 대하여 삭제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5조(징수방법)중에 수입증지 요금계기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의한 현금징수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의 별표1을 개정함
- 다. 유기장업법폐지와 관련하여 유기장영업허가에 관한 수수료요율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 임
-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보건사회관계란중 유기장영업허가,유기장영업허가 변경신청,유기장 영업 허가 재교부를 삭제하고 제7호 문화공보 관계란중 청소년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등록(신고) 1건 20,000원, 청소년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비디오·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신고)1건 2,000원, 비디오·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1,000원, 비디오물 감상실업자,소극장업자·그밖의 비디오 시청 제공업자 등록(신고) 1건 20,000원, 비디오물 감상실업자,소극장업자·그밖의 비디오시청 제공업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일반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신고) 1건 20,000원, 일반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을 신설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평창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p>	<p>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p> <p>【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10%;">기준</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인가,허가,신고,등록, 지정,확인등)</td> <td></td> <td></td> <td></td> </tr> <tr> <td>2.보건사회관계</td> <td></td> <td></td> <td></td> </tr> <tr> <td>0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d></td> </tr> <tr> <td>0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원</td> <td></td> </tr> <tr> <td>0유기장 영업허가 재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원</td> <td></td> </tr> <tr> <td>7.문화공보 관계</td> <td></td> <td></td> <td></td> </tr> <tr> <td>0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원</td> <td></td> </tr> <tr> <td>0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원</td> <td></td> </tr> <tr> <td>0 (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0 (신 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등록, 지정,확인등)				2.보건사회관계				0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 신청	1건	3,000원		0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0유기장 영업허가 재교부	1건	500원		7.문화공보 관계				0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500원		0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건	300원		0 (신 설)				0 (신 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10%;">기준</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인가,허가,신고,등록, 지정,확인등)</td> <td></td> <td></td> <td></td> </tr> <tr> <td>2.보건사회관계</td> <td></td> <td></td> <td></td> </tr> <tr> <td>0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0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0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7.문화공보 관계</td> <td></td> <td></td> <td></td> </tr> <tr> <td>0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0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0 청소년 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td> </tr> <tr> <td>0 청소년 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 사항 변경등록(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등록, 지정,확인등)				2.보건사회관계				0삭 제				0삭 제				0삭 제				7.문화공보 관계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 청소년 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 (신고)	1건	20,000원		0 청소년 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 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등록, 지정,확인등)																																																																																									
2.보건사회관계																																																																																									
0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 신청	1건	3,000원																																																																																							
0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0유기장 영업허가 재교부	1건	500원																																																																																							
7.문화공보 관계																																																																																									
0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500원																																																																																							
0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건	300원																																																																																							
0 (신 설)																																																																																									
0 (신 설)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등록, 지정,확인등)																																																																																									
2.보건사회관계																																																																																									
0삭 제																																																																																									
0삭 제																																																																																									
0삭 제																																																																																									
7.문화공보 관계																																																																																									
0현행과 같음																																																																																									
0현행과 같음																																																																																									
0 청소년 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 (신고)	1건	20,000원																																																																																							
0 청소년 게임장,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 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0(신설)				0 비디오·게임물판매 대여업 등록(신고)	1건	2,000원	
0(신설)				0 비디오·게임물판매 대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1,000원	
0(신설)				0 비디오물 감상실업 자,소극장업자·그 밖의 비디오 시청 제공업자 등록(신고)	1건	20,000원	
0(신설)				0 비디오물 감상실업 자,소극장업자·그 밖의 비디오 시청 제공업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0(신설)				0 일반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신고)	1건	20,000원	
0(신설)				0 일반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복합·유통제공업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1건	5,000원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제1항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등의 징수조례등) 제1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1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 제1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수수료) 제2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품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품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제1항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营业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營業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1항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유기장법관한 법률 연혁목록

1 유기장법

[제정 1961.12.6 법률 제810호]

2 <타> 유기장영업취체규칙

[폐지 1961.12.6 법률 제810호]

3 유기장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4 유기장업법

[전문개정 1984.4.10 법률 제3729호]

5 유기장업법

[폐지 1986.5.10 법률 제3822호]

□ 유기장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 제1항

①유기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서울특별시·직할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장소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유기장업법시행령 제4조(영업허가의 신청)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1·6·2>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정관의 등본).
2.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종목 및 구조설비의 개요.
4. 입장자의 정원.
5. 기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유기장업법시행령 제5조(수수료)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1·6·2>

□ 유기장업법

[폐지 1986.5.10 법률 제3822호 보건사회부]

유기장업법은 이를 폐지한다.